전시회 출전품을 비관세로 통관시키는 방법

전시회 출전품이나 샘플을 보세취급으로 일본으로 보내고자 할 때, 외국업자가 "ATA 카르네"를 취득하고 있으면 출전품이나 샘플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필요없이 보세 취급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에 반입할 수 있다.

그러나 이 때 출전품이나 샘플이 판매될 경우, 보세가 아니고 수입이 된다. 따라서 관할 세관서에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나 소비세를 납부 해야 한다.

*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

1. ATA 카르네(ATA carnet)

ATA는 Admission Temporaire(불어)와 Temporary Admission(영어)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(증서)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다.

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출입 또는 보세 운송

할 경우, 이에 필요한 통관서류나 담보금 대신 ATA 카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으며, 관세 및 부가세,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.

2. 통관이 가능한 물품

상품견본, 직업용구, 전시품목

* 다만, 농산물, 식료품, 위험물품,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금지 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 용할 수 없다.

3. 유효기간

발급일로부터 1년간, 기간연장은 불가능함

4. 담당자

대한상공회의소 ATA 카르네(02-6050-3302)

5. 비용

서명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(비회원): 55,000원

카르네 수수료: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참조

http://cert.korcham.net/certweb/html/carnet/carnet04.jsp

보험 수수료: 총 물품금액의 0.8% 정도

6. 발급절차

- (1) 상공회의소에서 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서명등록
- (2) 서명등록 여부는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들어가서 서명등록 -> 서명등록확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. 지방상의에만 서명등록을 했을 경우 ATA 카르네 신청업체는 서울상의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.
- (3) 서명등록을 클릭하여 왼쪽에서 여섯 번째 다운로드 양식 및 견본에서 서명등록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출력해서 작성해야 한다.
- (4) 서명등록을 한 업체는 무역인증서비스 센터 상단 가로로 다섯 번째 ATA 카르네를 클릭하신 후 왼쪽에서 두 번째 ATA 카르네 협약국에 나가고자 하는 나라가 있는지 확인한다.
- (5) 확인 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다운로드 양식 및 견본에서 ATA 카르네 신청서와 총괄 목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다.
- (6) 방문 접수시 물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 청약시에 날인할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. (보험 문의는 753-4760)